

(권속향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 조[입소용어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3장 제28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구로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 2 조[대상 및 모집방법]

① 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재가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② 급여종류: 장기요양보험제도 → 재가급여 → 노인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

③ 모집방법 및 홍보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 전 전화 상담 및 센터 방문 상담을 통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내역을 안내하고 이용에 관련한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 방문요양보호사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장기요양공단 홈페이지 및 주간보호서비스)

2.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3. 전단지 제작 후 홍보 및 배포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를 받는 자와 비급여자(일반대상자)를 구분하여 모집한다.

5.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6. 차량 시설스티커 부착으로 홍보

제 3 조[주야간보호 이용정원]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입소(이용)정원은 19명으로 한다.

2.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주야간보호(1일 기준), 방문요양(1회 기준) :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에 준한다.

② 급여 본인부담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60%경감자) 9%(40%경감자)

③ 주야간보호서비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제 4 조[입소절차]

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②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 평가)

③ 보호자 상담실시(행동관찰,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형성 등 평가)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⑤ 입소

제 5 조[입소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③ 입소용 건강검진
- ④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 ⑤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 6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프로그램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7 조[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에게 지장을 줄 때
-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8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⑤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9 조[퇴소상담]

본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0 조[퇴소의 절차]

-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1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3.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 조[서비스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가족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 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등의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프로그램 명	세부 프로그램 명
의료재활 서비스	건강 체크(활력증후 측정 및 혈당측정) 및 관리
	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건강교육, 건강검진,
기능회복 서비스	건강 체조, 워크북을 이용한 인지활동프로그램, ., 작업치료 근력 및 관절운동, 치료레크레이션, 걷기운동 등
사회적응 서비스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관리
	세상뉴스 알기, 맛집탐방, 경덕재 다방 이용하기
	나들이, 합동공연, 기타행사
외부강사 서비스	인지활동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게임) 등
심리기능 서비스	푸드 치료, 음악치료, 노래교실, 영상물감상, 회상요법, 미술치료
지원서비스	상담, 통신문 발송
부대서비스	중 · 석식, 간식서비스, 송영
사례관리	문제행동, 건강관리 등 문제해결 방안 토의
보호자간담회운영	- 장소: 경덕재주간보호센터 양별점
	- 대상: 이용어르신의 가족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용자(가족) 조사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 1 조[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 ①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 ②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

제 2 조[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제공 및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위의 ①, ②항과 시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3 조[종사자 배상책임]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조[면책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담당직원이 서비스 본연의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양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본 시설의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그 손해액 및 부대비용이 보상되며 담당자는 면책된다.
- ⑥ 담당직원이나 봉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동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담당직원이나 봉사자에게 고의성이 있지 않는 한 면책된다.